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
----------	-----

제출년월일 : 1993. 3.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개정이유

자녀장학금 최대지급대상 정원을 25명으로 한정하여 대원 다·소에 따른 소방서·군별 형평이 맞지않고 장학금 지급액을 중·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매년 50만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초과하는 불합리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장학금 지급대상 정원을 소방서·군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5/100로 함.
- 장학금 지급대상자 추천범위를 의용소방대당 2명에서 소방서·군 관할구역별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 함.
- 대학생 장학금 지급액을 매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내 용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참조

참고자료

현행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전문)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추 천) “의용소방대(부녀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의소대”라 한다) 당 2명 범위내”를 “소방서·군(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 이하같다) 관할구역별 정원의 2 배수범위내”로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수는 별지와 같다”를 “장학생의 정원은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 원수의 5/100로 한다”로 하고 (별지)를 삭제한다.

제6조(장학금액) “매년 50만원”을 “매년 60만원”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중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